

예 산 총 칙

201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282,723,957 | 8,481,719 |
| 일반회계 | 234,810,484 | 7,044,315 |
| 특별회계 | 47,913,473 | 1,437,404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8,913,067 | 567,392 |
|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| 18,913,067 | 567,392 |
| 기타특별회계 | 29,000,406 | 870,012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| 10,044,459 | 301,334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| 110,448 | 3,313 |
| 주택사업 특별회계 | 13,946,021 | 418,381 |
|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| 838,035 | 25,141 |
| 자활기금 특별회계 | 1,365,535 | 40,966 |
|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| 1,153,442 | 34,603 |
|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| 1,169,078 | 35,072 |
|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| 343,320 | 10,300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| 30,068 | 902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08,335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